##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

## 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업무상배임·뇌물공여

[서울중앙지방법원 2007. 2. 5. 2006고합474, 2006고합609(병합)]



## 【전문】

【피고인】피고인1외3인

【검사】이동열외 3인

【변 호 인】 변호사 정귀호외 3인

## 【주문】

1

피고인 1을 징역 3년에, 피고인 2, 피고인 3, 피고인 4를 각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.

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62일을 피고인 1에 대하여, 1일을 피고인 2에 대하여, 3일을 피고인 3에 대하여, 2일을 피고인 4에 대하여 위 각 형에 각 산입한다.

다만,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, 피고인 3, 피고인 4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.

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뇌물공여의 점은 무죄.

[이유]

1

[이유]

]

[이유]

]

【이유】

]

[이유]

1

【이유】

]

[이유]

1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